

—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7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7월 15일

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수정이유

- 본청 한시정원인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의 명칭을 변경하여
 -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, 통계 및 일사천리기동처리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 신설을 계획하였으나
 - '04. 6. 28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“여유기구제”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“여유기구” 설치시까지 주민자치과 신설을 보류코자 함.
- 자치단체 혁신, 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혁신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담부서를 지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과 신설은 『여유기구』 운영시까지 보류
- 혁신분권 전담부서 지정
 - 전담부서 : 기획정보실 기획담당관실
 - 담당사무
 - 지역단위 혁신·분권·균형발전업무
 -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

라.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3426(04. 4. 29)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8(04. 7. 2)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